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연장 공고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6. 6. 1. ~ 6. 30.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구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참여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환경 친화 사료	저메탄 사료 급여	▶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는 비육우 전체(번식우포함),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질소 저감 사료 급여	▶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돼지는 비육돈 생산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 * 동 [별표 13의4]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구매내역서)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kg 단위) 등 포함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분뇨 처리 개선	기계 교반· 강제 송풍 장비· 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강제 송풍 장비· 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2.6천원/톤/년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등을 이행기간 내 제출 * 전력계 내역: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사육 방식 개선	사육 기간 단축	▶ 한우(거세) 출하기준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여 출하하는 활동	29개월 이하	16.7천원/두
			28개월 이하	42.4천원/두
			27개월 이하	79.6천원/두
			26개월 이하	179.6천원/두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출하월령 증빙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출하 관련 자료: 가축 출하(도축) 확인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도축장 발급 서류 등으로 출하일자 및 개체식별정보가 확인되는 자료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공통	I.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II. 감액기준 동의서(대상사업 연도 기준)	
	III.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환경친화 사료 급여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기계교반· 강제송풍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육방식 개선	사업신청 전년도 1년간의 전체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신청년도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구에 등록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다.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증 제출(가축사육업 등록증, 종축업 허가증 등은 접수 불가)
- 당해년도 감액기준동의서 제출(작년 서식 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전체 페이지 제출
- 사육방식 개선 증빙서류 관련 출하실적 기준일('24.11월 ~ '25.10월) 준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 시행지침 1부. 끝.